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085
----------	-------

발의연월일 : 2025. 11. 10.

발 의 자 : 이용우 · 정준호 · 김기표
박 정 · 김태선 · 신장식
김남근 · 강득구 · 진선미
안호영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히트펌프(Heat Pump)는 전기에너지를 사용하여 공기, 수열, 지열 등 주변의 열을 흡수·이동시켜 난방·냉방·급탕 등에 활용하는 고효율 열에너지 설비로, 보일러 등 기존 연소방식과 대비해 3~5배 수준의 에너지 효율을 보임. 이러한 특징을 가진 히트펌프는 건물·산업 분야에서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약 및 연료 수입의존도 감소 등을 달성할 수 있는 핵심 기술로 평가됨.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국은 히트펌프를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 수단으로 지정하고, 설치보조금·세제혜택 등 히트펌프 보급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 현행법상으로는 공기열, 하천열, 하수열 등 히트펌프에 사용되는 에너지원이 재생에너지에 포함되지 않고, 그에 따라 히트펌프 또한 재생에너지 설비로 인정되지 않아 보조금 지원, 금융 지

원 등 보급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정책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성능 기준 이상의 히트펌프 및 관련 부대설비를 설치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대상인 히트펌프에 사용되는 에너지를 규정함으로써, 히트펌프 보급 활성화를 통해 건물·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효율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6조의4 신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제2절에 제36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4(히트펌프 설비의 지원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건물

· 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효율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성능 기준 이상의 히트펌프 및 관련 부대설비를 설치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 대상이 되는 히트펌프의 에너지원은 공기열 및 온도차에너지(지열·해수열·하천열·하수열을 포함한다)로서 그 기준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금액·내용 등은 히트펌프 및 관련 부대설비의 성능이나 에너지원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한다.

④ 그 밖에 히트펌프 지원 및 보급활성화의 기준·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36조의4(히트펌프 설비의 지원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건물·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효율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성능 기준 이상의 히트펌프 및 관련 부대설비를 설치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u> <u>② 제1항에 따라 지원 대상이 되는 히트펌프의 에너지원은 공기열 및 온도차에너지(지열·해수열·하천열·하수열을 포함한다)로서 그 기준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u>③ 제1항에 따른 지원 금액·내용 등은 히트펌프 및 관련 부대설비의 성능이나 에너지원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한다.</u> <u>④ 그 밖에 히트펌프 지원 및 보급활성화의 기준·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